

의안번호	제 278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10월 30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8
----------	-----

제출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부칙안 제2조)
(현행) 2015년 12월 31일 → (개정) 2018년 12월 31일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0조)
(현행)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인용 조문
→ (개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조문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및 자원 조달방안 : 붙임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사업”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의”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한다.

충청북도조례 제3441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충청북도조례 제3520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본문, 충청북도조례 제3654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

2조 및 충청북도조례 제3766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정한 적용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현행	개정안
<p><u>발계획의 고시일</u>부터 15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한다.</p>	<p><u>의 지정</u> ----- -----.</p>
<p>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p>	<p>② ----- ----- ----- -----.</p>
<p>1. <u>기업도시개발구역</u>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p>	<p>1. 「<u>기업도시개발 특별법</u>」 제 5조에 따라 지정된 <u>기업도시개발구역</u> -----</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u>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u>」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u>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u>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p>	<p>3. 「<u>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1조 ----- ----- <u>지역개발사업구역</u> ----- ----- -----</p>
<p>4. 「<u>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u>」 제11조제1항</p>	<p>4. 「<u>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18조 -----</p>

현 행	개 정 안
<p>에 따라 <u>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u></p>	<p>----- <u>지역개발사업구역</u> ----- ----- ----- -----</p>
<p>5.·6. (생략) ③ (생략)</p>	<p>5.·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충청북도조례 제3441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p>	<p>충청북도조례 제3441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p>
<p>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15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제2조(유효기간) ----- <u>2018년 12월 31일</u>----- --.</p>
<p>충청북도조례 제3520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충청북도조례 제3520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15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한 적용시한을 따른다.</p>	<p>제2조(유효기간) ----- <u>2018년 12월 31일</u>----- --. ----- -----.</p>
<p>충청북도조례 제3654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충청북도조례 제3654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15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p>	<p>제2조(유효기간) ----- <u>2018년 12월 31일</u>-----</p>

현행	개정안
<p>다.</p> <p>충청북도조례 제3766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15</u> <u>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 다.</p>	<p>--.</p> <p>충청북도조례 제3766호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p> <p>제2조(유효기간) ----- <u>2018</u> <u>년 12월 31일</u>----- --.</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9.>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

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 [제목개정 2010.12.27.]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

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2.23.>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 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전문개정 2010.1.1.]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외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안자의 신청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된 개발구역을 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亂開發)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④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11. 제27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⑦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환지(換地)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를 공고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

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지정·수립 등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변경사업계획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6.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날로 한다)부터 15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일부터 15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날로 한다)부터 15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15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2. 12. 28>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6.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③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 12. 28]

[제11조에서 이동 <2012. 12. 28>]

[중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2. 12. 28>]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

2. 비용 발생 요인

- 도세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으로 도세 감면혜택 3년간 지속 추진
- 감면 대상자에 대한 도세 감면액 발생

3. 관련조문 : 12개 조문

-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3조)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4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5조)
-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제6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8조)
-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의2)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의3)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감면대상 물건 취득시 감면혜택이 적용되므로 비용(예상액) 추계가 어려움
-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감면액 등을 기초로 감면예상액 추계

나. 추계 결과

《연도별 감면예상액》

(단위: 백만원)

연번	도세 감면조례 조문별	연평균 감면액* (추계)	연도별 감면예상액(추계)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2개 조문	6,558	6,558	6,558	6,558	
1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	162	162	162	162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3조)	89	89	89	89	
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4조)	-	-	-	-	추계불가
4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5조)	3	3	3	3	
5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제6조)	-	-	-	-	추계불가
6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31	31	31	31	
7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8조)	183	183	183	183	
8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	687	687	687	687	
9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5,162	5,162	5,162	5,162	
1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의2)	43	43	43	43	
1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의3)	193	193	193	193	
1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5	5	5	5	

* 감면예상액(추계)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감면 평균액을 기초로 추계

다. 재원조달방안

- 세제감면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예산을 별도로 수반하지 않음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연도별 감면예상액은 도세 징수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것임
 - ※ 연도별 감면예상액(6,558백만원)은 '14년 도세 징수액(854,664백만원) 대비 0.77% 임
- 앞으로 도세 세입현황을 수시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및 납기내 납부 홍보 강화 등으로 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생략 (추계 결과로 같음)

6. 작성자 : 행정국 세정과장 이홍신